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확충을 위한 청소년 활동
진흥법 개정안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
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건의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6년 01월 28일

청 원 인

성 명 : 김유빈

주 소 :

전화번호: (휴대전화:)

소 개 의 원 : (인) 외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
	성명 : 김유빈
건명	청소년 수련관의 시설 확충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
소개년월일	2016년 01월 27일
<p>소개의견</p> <p>본 청원인 ‘김유빈 외 9인’은 제 18회 임시회의 &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입니다. 2016년 1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『청소년 수련관의 시설확충을 위한 청소년 활동진흥법 개정안』입니다.</p> <p>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,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청소년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체험활동을 저렴한 가격에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기관입니다.</p> <p>‘국가 통계포털’의 출처, 청소년 수련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약 88%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.</p> <p>그러나 ‘e-나라지표’와 ‘여성가족부’출처 조사결과, 전국 청소년 인구수는 약 961만명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 수는 420개로 나타났습니다.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</p> <p>예를 들어, 울산광역시의 경우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13만 9958명인데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평균 15만 9952명의 학생들이 수련시설 한 곳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 이를 보았을 때, 청소년 수련시설이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.</p> <p>이에 따라 본 제 18회 임시회의 &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들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수련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.</p> <p>본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*현행 ‘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2장 5조(청소년 활동의 지원)’의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</p>	



소 개 의 원 인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응답자유형별(1)	응답자유형별(2)	2014			
		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만족하지 않는 편이다	만족하는 편이다	매우 만족한다
전체	소계	2.1	10.2	72.0	15.7

청소년 시설의 이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 위 표에 따르면, 이용자의 약 88%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반응을 보였다.

(단위 : 천 명)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총 인구	48,297	48,456	48,607	48,746	49,410	49,779	50,004	50,220	50,424	50,617
0~18세	11,515	11,321	11,120	10,902	10,763	10,538	10,276	10,019	9,772	9,538
(18세이하 구성비,%)	23.8	23.4	22.9	22.4	21.8	21.2	20.6	20.0	19.4	18.8
9~24세	10,848	10,659	10,494	10,384	10,465	10,360	10,197	10,039	9,838	9,610
(9~24세 구성비,%)	22.5	22.0	21.6	21.3	21.2	20.8	20.4	20.0	19.5	19.0

*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(2014. 12월말 기준, 단위:개소)

구분	계	수련관	문화의집	수련원	야영장	유스호스텔	특화시설
계	787	187	233	188	42	128	9
공공	513	184	227	54	21	18	9
민간	274	3	6	134	21	110	0

(위의 표)e-나라지표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인구는 약 961만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(아래의 표)전국에 분포한 청소년수련시설(수련관+문화의집)은 420개로 청소년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.

지역	10~19세	청소년수련관	문화의집	예상 수련관당 이용 청소년	예상 문화의 집 이용 청소년
서울	985770	63	17	15647	57986
부산	345503	8	11	43188	31409

대구	289590	5	6	57918	48265
인천	324530	8	4	40566	81133
광주	197005	5	6	39401	32834
대전	184964	2	6	92482	30827
울산	139958	1	7	139958	19994
경기	1479739	30	51	49325	29014
강원	171074	16	28	10692	6110
충북	179628	8	10	22454	17963
충남	229214	11	9	20838	25468
전북	217813	11	18	19801	12101
전남	299957	9	15	33329	19997
경북	277327	16	13	17333	21333
경남	384287	16	15	24018	25619
제주	120000	3	20	40000	6000

또한 위의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, 서울, 경기, 강원, 전북, 경북, 경남과 같이 인구 밀집지역 혹은 지역이 큰 곳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인구비율에 비해 청소년 수련기관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본 제 18회 임시회의 & 청소년 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구에 비례해 만족도가 높은 수련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
2. 주요골자

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장 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행	개정문
<p>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</p> <p>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</p> <p>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2장 청소년 활동의 보장</p> <p>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</p> <p>①~③ 현행과 동일함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시군구 별 인구 비례에 근거한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에 노력해야한다.</p>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

연 번	의 원 명	날 인	소 속 정 당	소속위원회	선 거 구	비 고

는 사본)이며
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 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

 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4. 청원서

-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